

# 스탁론 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여신금융협회 약관 신고일 : 2023.01.25)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MG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고자하는 고객(이하 “채무자”라 한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회사는 이를 대출실행 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한다.

## 제3조 (대출의 실행)

- ① 약정에 의한 대출은 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한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한다.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6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전 공제할 수 있다.

##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첫회 납입일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금액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한다.
- ②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 ④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최대3%, 법정최고금리 이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 ⑤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약정이자율로 적용한다.

1.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제5조 (변제의 충당)

채무자의 대출금 변제금액이 채무잔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제반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 제6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 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
-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한다.

## 제7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②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증권계좌의 평가 금액이 본인이 선택하여 동의한 계좌운용규칙상의 최저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한 때에는 계좌운용규칙상의 절차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 제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기한도래 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한다.

## 제9조 (결제방법)

① 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계좌이체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한다.

② 제1항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며, 그 약정한도 내에서 자동인출하여 결제한다.

③ 제 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 제10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상환 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 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 제11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 ①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은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한다.
- ②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 제12조 (채권양도)

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한다.

## 제14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한다.